



알기 쉽고 편리한
SEOUL IMMIGRATION OFFICE

출입국 민원 안내



알기 쉽고 편리한
SEOUL IMMIGRATION OFFICE

출입국 민원 안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Seoul Immigration Office



서울출입국·외국인청
Seoul Immigration Office

CONTENTS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개

온라인 민원 서비스

대면 민원 서비스

법 위반 사례

법 위반인 줄 몰랐더라도
처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BEST

알기 쉽고 편리한 출입국 민원 안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청은 대한민국 수도 중심부를 관할하는 대표 출입국·외국인관서로서, 체류외국인이 보다 편리하게 체류지원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 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 등을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정보를 드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모쪼록 유익하게 활용되기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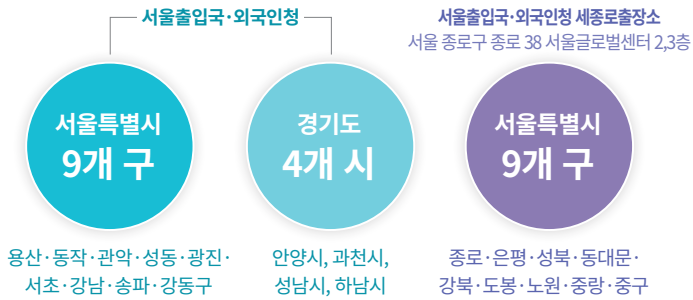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연혁

- 1963. 12. 16.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 2006. 5. 3. 세종로출장소 신설
- 2010. 8. 2.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 2013. 7.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분리 개설
- 2015. 4. 22. 전자비자센터 개소
- 2018. 5. 10. 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기관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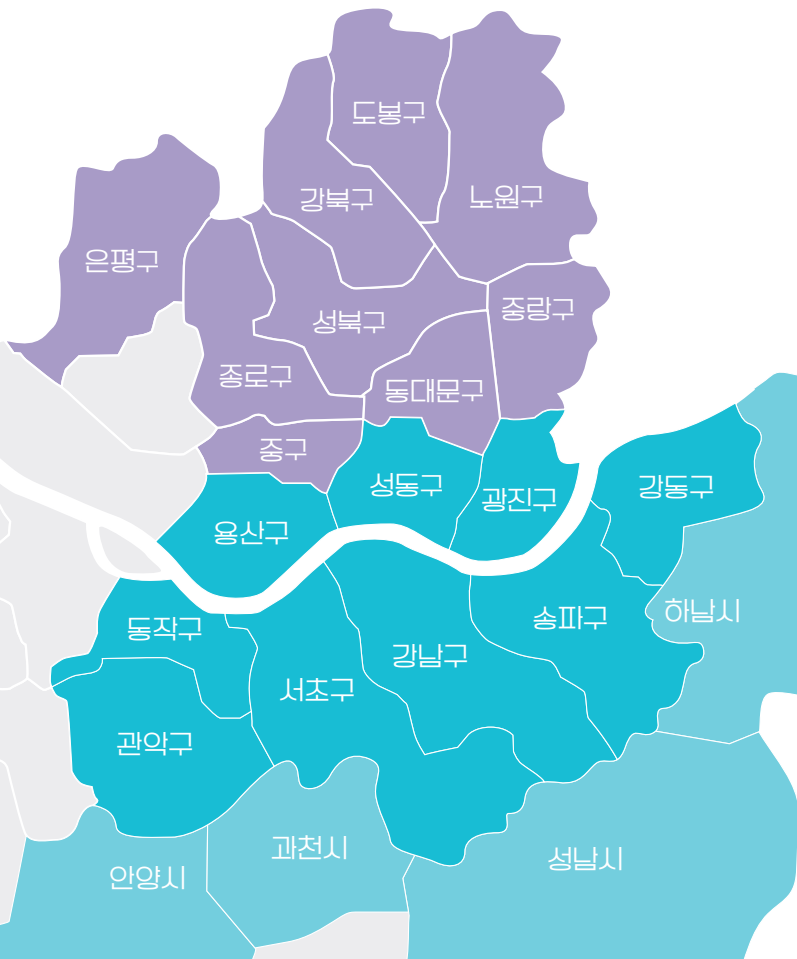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활동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서울출입국 Facebook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할구역



주의 서울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및 경기도 광명시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지하철 5호선 마곡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분 거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안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F	총무과 정보공개청구, 개인정보열람신청, 대행기관 등록, 서울청 운영 지원
6F	사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위반자 사법심사, 범칙금·과태료 처분
	조사과 실태조사 관련 인터뷰, 단속 제보(☎1588-7191)
5F	보호실 보호외국인 면회, 물품 전달
4F	출입국 정보화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F	관리과 중국계 중국 국적 외국인(홍콩, 대만 제외) 체류허가 신청 및 심사, 출입국민원 행정 대행 접수
	우리은행 체류허가 수수료, 범칙금, 과태료 납부 (ATM 이용 가능)
	수입인지판매 전자수입인지 구입, 서류 복사
2F	국적·통합과 국적신청(귀화·국적회복), 국적신고 (취득·선택·상실·보유), 이민자 사회통합, 수유실 신관 난민면접실(신관 입구 이용)
	난민과 본관 난민면접실 : 난민신청자 면접심사 귀화면접실 : 국적(귀화)신청자 면접심사 신관 난민신청 접수, 난민면접실(신관 입구 이용)
1F	관리과 중국 국적을 제외한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심사 등
	투자지원센터 기업투자(D-8), 우수인재 비자 등 심사, 증명발급, 외국인등록증(ID Card) 수령
	수입인지판매 전자수입인지 구입, 서류 복사, 즉석사진 (ATM 이용 가능)
	청사 로비 민원인용 컴퓨터(PC) 이용(인쇄 가능), 전자혈압계, 휴대폰 충전기, 휠체어, 유모차 등 편의시설

※인근 동 주민센터
신정2동 주민센터(02-2620-4210) 출입국·외국인청 길 건너 맞은편

PART
01

온라인 민원 서비스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민원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민원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각종 정보 조회 서비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출국금지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업무



관할출입국/
외국인관서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체류만료일
조회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출국금지 여부 조회
(한국인 전용)

[하이코리아 이용가능 민원 및 체류자격]

등록외국인의 출국기간연장

재입국허가(단수)

단기체류자의 출국기간연장

여권변경신고

E-9 근무처 변경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 신고

시간제 취업허가 및 변동신고

고용변동신고

H-2 취업개시 통합신고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 D-2, F-4(일부 제한)로의 자격변경

→ 단기체류자 : B-1, B-2, C-3, C-4(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외국인 : D-1, D-2, D-4, D-5, D-6, D-7, D-9, D-10, E-1, E-2, E-3, E-4, E-5, E-6, E-9, E-10, F-1(일부 제한), F-3, H-1, H-2, F-4

[하이코리아 이용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민원신청
배너클릭

신청민원
클릭

구비서류 첨부
수수료 납부

※ 전자민원 이용시간 : 평일 7:00 - 22:00

※ 민원서식 및 구비서류 : Hi Korea 메인페이지의 [민원서식] 및 [자격별 안내 매뉴얼] 참고

※ 전자민원 진행과정 및 결과는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 [전자민원현황]에서 확인

[이용가능사무]



여권변경 신고
(여권번호 · 발급일자 · 유효기간 변경에 한함)



고용변동 신고
(퇴직, 소재불명,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등)



이 외 각종 출입국 민원업무 간편 신고 가능
(취업 및 연수개시신고, 재학여부 등)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신고(법 제35조 제1호)는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므로 팩스신고 제외

[이용방법]

고용주(법19조 관련)

- 고용변동신고
(퇴직, 소재불명, 사망, 사업자 정보변동 등)

팩스송부(☎ 1577-1346)

-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 기타 등록외국인은 통합신고서
- 신고별 필요 서류
(서류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1345 콜센터 이용)

등록외국인(법35조 관련)

-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 개시 신고 및 근무처변경

접수처리(관할사무소)

- 접수/(불)수리
- 보완요청
- 반려

수신(관할사무소)

수신확인 회신문 자동발송

신고 관련 문의(민원인)

↓ ↑
종합안내센터(☎ 1345)

※전국 단일번호(1577-1346) 사용, 신고가능시간은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09:00 ~ 18:00
(전송실패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대체 번호 문의 바랍니다.)

주의 사항

- ※ 반드시 법무부 회신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회신문은 신고서 등이 처리기관에 착신되었음을 알려드릴 뿐,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되었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당일 출력 가능]



참고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을 통해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 외국인등록증 수령 등 업무가 가능합니다.

(단, 위임 수수료 등 비용 발생 가능)

유의 사항

대행 신청이더라도 지문수집, 본인확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외국인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신청 등이 거절 또는 유보**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21년부터 거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규 등록자 교육, 기존 대행기관 등록자는 2년마다 1회 보수교육)

PART
02

대면 민원 서비스

온라인업무가 어려우세요?
직접 방문하셔도 업무별 민원서비스를
친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별 민원 신청 유의사항

공통 사항

- 체류(외국인등록·기간연장·체류자격변경 등) 민원, 국적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터넷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노약자(70세 이상), 임산부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처리 가능(단,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음)

※ 난민신청, 출입국사범심사 업무는 방문예약 없이 가능합니다.

- **신청 준비서류** 등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상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별 전화 이용 안내

이용방법

지역번호 없이 1345로 전화 연결

상담시간

24시간
(20개국 언어 제공/ 다만,
평일 18시 이후 및 토·공휴일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상담서비스 운영)

1345 + 국가번호 + *

1 한국어	11 파키스탄어 اردو
2 중국어 汉语	12 러시아어 Русский язык
3 영어 English	13 네팔어 नेपाली
4 베트남어 Tiếng Việt	14 캄보디아어 Khmer
5 타이어 ไทย/ไทย	15 미얀마어 မြန်မာစာ
6 일본어 日本語	16 독일어 Deutsch
7 몽골어 Монгол хэл	17 스페인어 Español
8 인도어 Bahasa Indonesia	18 필리핀어 Tagalog
9 프랑스어 Français	19 아랍어 اللغة العربية
10 방글라데시어 বাংলা	20 스리랑카어 සිංහල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사항

- ①번 출입국·외국인관서 위치·관할구역·근무시간 안내
- ②번 사증발급인정 신청결과 조회
- ③번 퇴직신고, 방문취업자 근무처신고안내
- ④번 마을번호사 법률상담
- ⑤번 상담사 연결

다국어 상담

1345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 뒤 별표(*) 버튼을 누르면 이용 가능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제시**가 원칙입니다.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범죄경력증명서, 학위증 등)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체류 민원

(외국인등록·기간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 민원 창구 호출번호에 해당하는 예약자는 호출 창구로 오시기 바라며,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반드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수수료 등)
심사과정에서 신청업무 및 체류자격 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기간 등이 부여되므로 체류허가 신청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세금(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 및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거나 불법고용** 등으로 벌금형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외국인 초청이 제한됩니다.

국적 민원

- 국적민원 신청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 * 단, 신고·신청인이 만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출석,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신고 가능
- 업무 종류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구역 적용 업무) 귀화, 국적회복 신청
 - * [서울출입국 관할지역] 서울시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 (관할구역 비적용 업무) 국적취득, 국적선택, 국적보유, 국적상실 등 각종 신고,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제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외국국적포기(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 국적판정 신청, 국적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 ☞ 단,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난민 신청

- **난민신청서 및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지 신고 및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 및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① 불법체류 등 법 위반 외국인, ②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으로 난민신청한 사람, ③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장기 체류 후 난민신청한 사람, ④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사람 등은 체류자격(G-1) **변경 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 후 **국내 체류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여 연락 불가한 경우 난민심사 종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명 발급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종 증명 발급은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이라도 **제3자에게 증명발급, 개인정보 제공 등이 불가**합니다.
→ 증명 발급받고자 하는 본인의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PART
03

법 위반인 줄 몰랐더라도 처벌됩니다!



각종 신고의무 위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 F씨는 결혼과 동시에 이름이 변경되어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이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점을 몰랐다고 함

결과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등 위반
처분사항 과태료 최대 100만원 처분

외국인은 자신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등이 변경되었을 때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터넷(하이코리아) 또는 전자팩스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각종 신고의무 위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J씨는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였음. 세대주인 J씨는 다른 가족도 함께 주소지가 변경된 줄 알았으나 외국인 배우자인 N씨는 체류지 변경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함.

결과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 36조 또는 「재외동포법」 제6조 등 위반
처분사항 최대 범칙금 100만원 또는 최대 과태료 200만원 처분

외국인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재외동포(F-4) 자격의 외국인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터넷(하이코리아)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 → 단순노무 불가(예: 건설일용직, 배달·택배)

단순노무 업종 등에 취업한 재외동포(F-4)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B씨는 단순노무를 할 수 없음에도 ○○택배업체에서 택배원으로 근무했는데, B씨는 택배나 배달 일이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단순노무인 것을 몰랐다고 함

결과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
처분사항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 취업이 제한됩니다.

(예시) 배달, 택배, 홀서빙, 청소, 이삿짐 운반원, 건물관리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마사지사, 발관리사, 목욕관리사, PC방 종사원, 노래방 종사원 등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제한 범위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고용주 고용변동신고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고용주



H씨는 외국인 E씨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 최근 E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음

결과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등 위반
처분사항 과태료 최대 200만원 처분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소재불명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경우(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이전 등)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터넷(하이코리아) 또는 전자팩스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유학생 → 시간제 취업 시 허가 필요

취업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 유학생



○○대학교 국제학부 재학중인 유학생 A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일했는데, A는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함

결과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
처분사항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고, 외국어 개인교습,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KIIP 4단계) 이상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 가능). 방학이나 휴학기간에도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이 불법취업하다 적발된 경우, 구직(D-10) 자격 제한 및 국내 취업이 불가하거나 출국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사 이용 시(학부모) → 개인과외 불가

SNS를 통해 영어회화 개인과외를 모집한 원어민 회화강사 고용



학부모 C씨는 외국인 회화강사가 SNS를 통해 인터넷 강의 수강자를 모으고 개인과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자녀의 영어회화를 위해 신청하였음. C씨는 회화(E-2)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회화 개인과외를 받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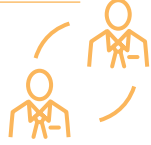
결과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
처분사항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만 원어민 강사의 고용이 가능 하지만 유치원 또는 개인과외 교습 등을 위해 원어민 강사 고용은 불가합니다.

※ 해당 외국인인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20조 등 위반으로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또는 출국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외국인 고용 → 해외에서 가사보조인 초청 불가

해외에서 가사보조인을 위장초청한 한국인



☆☆ 기업 총수 가족의 일원인 한국인 D씨는 해외에서 가사보조인을 초청할 수 없자 마치 ☆☆ 기업 직원인 것처럼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허위 초청함

결과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등 위반
처분사항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국민은 가사노동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단,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가사보조인으로 고용 가능)

외국국적 취득자의 대한민국 여권 부정 사용

한국여권을 부정사용한 외국국적 취득자



한국인 G씨는 미국 시민권 취득 선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나, 이를 몰랐던 G씨는 소지하고 있던 한국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국에 입국할 때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음

결과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등 위반
처분사항 범칙금 최대 6,000만원 통고처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알기 쉽고 편리한
SEOUL IMMIGRATION OFFICE

출입국
민원 안내

PART
04

자주 묻는 질문 BEST



Q. 외국인등록을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A.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단, 외교(A-1)·공무(A-2)·협정(A-3) 비자 소지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무소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사무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만료 당일(전자민원의 경우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A. 공통서류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는 하이코리아 사이트 내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 군, 구청 및 주민 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출입국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Q. 귀화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영주자격을 소지해야 하나요?

A. 2018.12.20.부터 국적법 제5조에 따라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주(F-5)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Q. 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 시민권(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그 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이 당연 상실되므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혼인·입양·인지·수반취득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 가능

Q. 영주권자도 연장 등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Q. 이사를 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등록외국인 또는 거소신고자(F-4)가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F-4는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속해 있더라도 세대주와 함께 자동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공증된 번역본이란 번역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번역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이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 민원인·방문객 편의를 위해 전자혈압계, 휴대폰 충전기, 휠체어, 유모차를 비치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필요시 안내데스크 문의).

• 국적, 재외동포, 외국인 초청, 고용 등 자주 질문하시는 출입국 관련 기본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 접속 → 정보광장 → 출입국관련 법령지침 정보에서 확인 가능

• 코로나19 예방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방문 콜 전화 및 열화상 카메라 체크 등 청사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 서울청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전화: 02-2650-6214, 팩스: 02-2650-6295)
지하철 :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 약 800m 거리

